

제목: ??

이름: ???

- ① ‘서론-본론-결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한 줄을 띄어 구분하기.
- ②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③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없음.
- ④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가 논의를 해야 함.
- ⑤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서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올 때면 사람들은 “저런 것들은 그냥 다 사형시켜 버려야 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그들에게 오판의 가능성은? 개심 여지는 없을까? 그들을 그냥 옹호하거나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판의 가능성과 개심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사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엄성을 해치는 처벌이며 극단적인 형벌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대다수 사람은 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는 반대하더라도 알고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함으로써 사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1.1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

사형제도 유지하면 가장 많이들 말하는 것이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일 것이다. 범죄자들이 사형제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하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로도 반대인 결과도 나왔지만, 후속 연구 수가 부족해 현재까진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범죄에 대한 위하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는 더더욱 범죄를 억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1.2 사형수들의 생활 유지 비용

우리나라는 1997년을 기준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형수들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형수의 숫자는 일반 수감 인원인 약 57,600명 중 60명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결정이 경제적인 동기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형의 시효 제도에 따라 사형수는 집행

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30년 후에 풀려나게 될 사형보다 종신형이나 다른 대체형벌을 채택해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 피해자들의 고통 해소

흉악범죄로 받는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원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 때문에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당한 만큼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강한 처벌인 사형으로 말이다. 그들은 흉악범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을 해쳤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판의 가능성과 개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처벌은 복수의 차원으로 행해져선 안 된다.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하는 사형은 복수이자 또 다른 살인에 불과하다. 한국 인권위원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되는가? 라는 설문의 89.5%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사형 집행으로 피해자의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론]

윗글을 읽으며 하나의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핵심은 이거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사형이 집행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말 그대로 사형 집행만 하지 않았던 것이지 언제든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사형에 쓰는 약품에 계약이 끝나간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었던 카타르도 17년 만에 총살형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이처럼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하루빨리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홍문기.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문창위, 류병관.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의 시효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주저자),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교신저자), 한국형사법학회, 2021.

이정열, 이선수, 황선수, 홍순정.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원위원회, 2004), 68

이경신, “부당한 죽음을 낳은 사형제도” *일다*, 2014/12/03, <https://www.ildaro.com/69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9.07.11, <https://amnesty.or.kr/29590/>